

[별표3]

소방선박(수난구조 및 소방정대)대원 개인휴대 안전장비 보유기준

●필수 / ○선택

연번	장 비 명		수량	항 해 사	기 관 사	구조대원	구급대원	비고
계	26종		32	13(6)	13(6)	16(8)	18(7)	
1	개인 위치확인 신호기		1	●	●	●	●	
2	선박용 구명동의		1	●	●	●	●	
3	비상탈출 호흡장비		1	●	●	●	●	
4	방수복		1	●	●	●	●	
5	구조·안전장갑		2	●	●	●	●	중복
6	구조·구급·안전화		1	●	●	●	●	중복
7	구조·안전헬멧		1	●	●	●	●	중복
8	방독마스크		1	●	●	○	○	
9	안전벨트(전신형 또는 하반신형)		1			●	●	중복
10	카라비너		2	●	●	●	●	중복
11	개인로프		1	●	●	●	●	중복
12	관절보호대 세트		1			○	○	중복
13	잠수복		1	○	○	●	●	
14	허리보호대		1				●	중복
15	다기능조끼		1				●	중복
16	다목적칼		1			○	○	중복
17	개인장비 보관가방		1	●	●	●	●	중복
18	도끼		1			○		중복
19	소방장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유장비	안전안경	1	●	●	●	●	중복
20		개인랜턴	1	●	●	●	●	중복
21		공기호흡기	1	●	●	●	●	중복
22		방화복	2	●	●	●	●	중복
23		안전모	1	●	●	●	●	
24		보호장갑	2	●	●	●	●	
25		안전화	2	●	●	●	●	
26		방화두건	2	●	●	●	●	중복

※ 참고 1.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2, 구급장비 기준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과 중복 또는 미표시된 장비는 구조장비 보유기준 또는 구급장비 보유기준을 따른다.

2. 방수복은 수상에서의 체온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잠수복으로 대체 가능